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0. 5. 6.부터 5. 18.까지(8일간) 종합건설본부를 대상으로 2017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O 감사결과 총 36건(본 처분 21건, 현지처분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 O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 5건에 대하여는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71	처	서 분 현 황(건) 행정 상 조 치(건) 재정상조치(천 원)				행정상조치(건)			천 원)	
구분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권고 통고				계	추징· 환수 등	환급 · 감액 등
계	36	21	15	36	15	20	1	259,278	-	259,278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

【 수 범 사 례 】

수범사례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 인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본부와 시공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발전 협약 체결

□ 추진실적

- 2017.05.24.: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 2017.12.18.: 『인천가족공원조성(3-1단계)사업 봉안당 건립공사』
- 2018.01.25.: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
- 2018.05.16.: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 2018.09.04.: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공사』
- 2019.05.21.: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
- O 2019.12.18.: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 2020.02.04.:『교산천・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2020.05.06.: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

□ 언론 홍보사항

- 2017.12.19.: 매일일보, 아주경제, 일요신문, 내외뉴스통신
- 2018.05.17.: 전국매일
- 2019.05.21.: 중부일보, 기호일보, 브릿지경제, 파이낸셜뉴스, 뉴스렙, 머니투데이방송, 아주경제
- 2020.02.05.: 시민일보, 기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경인일보
- 2020.05.07.: 남인천방송, 중부일보

□ 추진성과

(단위: 건, 백만 원)

	7	전 체 지 역 업 체		전 체		지 역 업 체			타	지 역
구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수주		업체수	금액		
		<u> </u>			업체수대비	금액대비		; 		
2019	92	57,570	89	45,724	96.7%	79.4%	3	11,846		
2018	102	237,510	93	171,865	91.2%	72.4%	9	65,645		
2017	82	44,786	80	41,252	97.6%	92.1%	2	3,534		

수범사례 2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

- ❖ 청렴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청렴시책 실천을 통한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
-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열린 감사를 통함 내·외부 청렴도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O 청렴소통의 날 운영 및 직원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감과 투명성 향상 도모
- O 안전신문고 청렴실천 BAND를 통해 직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기적 으로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공유하여 청렴문화 실천
- O 2020년도 시종합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등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추진실적

- O 직원 청렴교육
 - 매월 7일 청렴소통의 날 운영
 - 청렴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이수 독려
- O 회계부정 방지
 - 청렴해피콜 및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적극 참여
- O 안전신문고 청렴실천 BAND 운영
 - 청렴 소통의 날 자료 전파 및 청렴 관련 자료 공유
- O 2020년도 시종합감사 수감
 -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제고를 통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수범사례 3 신기술·특허·자재 선정 방법 개선

❖ 신기술·특허·자재 선정 및 채택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 적용대상

- O 신기술, 특허 등 독점적 기술에 의한 공법·자재
-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1억워 이상 아래 관급자재
 - 3자단가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하여 독점적으로 구매
 - 총액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하여 독점적으로 구매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제외)
- O 제외대상 : 외부기관의 심사 및 심의로 선정되는 경우

□ 주요 개정사항

가. 적용대상 명확화

- 당초
 - 특정(신)기술・공법
 - 제3자단가계약, 총액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1억원 이상 독점적으로 사용(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제외)

○ 변경

- (신)기술을 신기술로, 공법을 특허로 변경
- 제3자단가계약, 총액계약은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지침에서 공법은 특허를 의미하므로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용어 변경

나. 위원회 구성 대상 확대

○ 당초

- (내부위원) 본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위원) 인천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설계경제성검토위원
- 기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변경

- (내부위원) 본부 소속의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 중 기술사. 건축사 자격 소지자 추가
- O 변경사유: 위원회 인력 Pool 확대 및 전문성 보장

다.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O (당초) 청렴서약서 제출 조항 없음
- O (변경) 제안자, 설계자 및 심의위원 모두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O (변경사유) 청렴서약서 제출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

라. 평가방법 개선

○ 당초

- 평가항목은 위원별 정성적 평가만 존재
- 평가내용에 따른 배점 세분 없음
- 지역업체 항목의 배점 모호

○ 변경

- 정성적 평가(60점)와 정량적 평가(40점)로 구분
- 정성적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추가
- 제안가격 평가 신설(2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격평가와 동일
- 지역업체 점수의 기준 수립(10점)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외의 추가 보증기간에 따른 배점 신설(5점)

- 활용실적에 따른 배점 기준 신설(5점)
- 신기술 가점(2점) 및 자문위원 사전접촉 감점 추가(△10점)

○ 변경사유

- 정성적 평가만 존재하여 평가의 자의성이 높은 단점 보완
-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구체적 평가 실시
- 발주처에서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를 추가하여 공정성 확보

마. 기타사항(지침 별지 서식 등)

- 제안자가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성능보증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보증 기간을 제출, 정량적 평가자료로 활용하므로 품질 및 내구성 향상 기대
- O 설계자가 기준가격을 제시하여 제안가격 평가자료로 활용
- O 위원회 개최 시 평가표 및 총괄표 작성 신설

□ 기대효과

- O 평가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량적 평가를 추가하여 공정 성과 투명성 확보
- O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수범사례 4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3-1공구] 토지임대료 등 공사비 절감

❖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가설사무소 설치에 드는 토지임대료 등의 비용을 절감

□ 사업개요

○ 위 치 : 부평구 산곡동 285(안남로)~산곡동 237(마장로)

O 규 모: L=620m B=30m(6차로, 미군기지 外)

○ 총사업비 : 35,040백만원(국비 12,100(35%), 시비 22,940(65%))

○ 사업기간 : 2009. 7. 8. ~ 2019.12.24.

□ 추진실적

○ 2009. 7. 8.: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0. 5.24.: 미군기지 제외구간 실시계획 인가 고시(3차-1공구)

○ 2015. 5. :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통보

○ 2017. 4. 3.: 지장가옥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준공

○ 2017. 6.15.: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통보(3차2공구, 1공구 우선 착공)

○ 2018. 5.25.: 공사 착공

○ 2019.12.24.: 공사 준공

○ 2020. 1.21.: 개통식 개최

□ 추진성과

○ 공사설계 시 가설사무소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료를 주변 지가를 고려 하여 산정하였으나, 공사 착공 후 현장 인근 상가를 임대하여 공사비를 절감함(771백만원)

수범사례 5 은행제한차량 예방·홍보 활동 및 합동단속

❖ 운행제한(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행제한(과적)차량 예방・홍보 활동 및 합동단속 실시

□ 개 요

- O 관련근거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99호 2017. 1. 6.) 제22조(합동단속) 및 제29조(운행제한 위반행위 예방)
- O 시행일시 : 연4회 실시(분기별)
 - 예방,홍보 활동 : 07:00 ~ 12:00
 - 합동단속(주간) : 13:00 ~ 18:00
 - 특별단속(야간) : 19:00 ~ 21:00
- O 장 소
 - 홍보활동 : 고정검문소,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북인천 TG, 부평대로 등
 - 합동단속 : 고정검문소, 부평대로, 송도 신항 및 해안도로, 영종도 등
- O 참여기관·인원(4개 기관)
 - 종합건설본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 예방홍보 실적

홍보방법	홍 보 내 역	비고		
중도경임 	홍보대상	개소	HI 17	
합계		25,668		
우편홍보	운송관련 업체	16,716	·e-그린우편 안내문 발송	
직접홍보	운행허가시 (허가서에 첨부)	8,760	·허가 발급시 안내 홍보물 직접전달	
1 1 1 1 5 T	다수 민원발생 건설현장	48	• 관내 건설현장 등	
반상회보	각 군구 반상회보	12	· 자치행정과 문서발송	
방송.신문보도	경인방송 외	132	·보도자료 공보실 송부(메일)	

□ 합동 및 특별 단속실적

O 참여인원 : 40명

- 종합건설본부 인원 : 30명(고정검문서 1개반 7명, 이동단속반 5개반 20명, 상황반 : 팀장 및 담당자 2명)

중부경찰서 : 2명㈜인천대교 : 4명

- ㈜신공항하이웨이 : 4명

O 연도별 합동 및 특별단속 실적

구분	인원	7	계		합동단속		단속	비고
		검차	적발	검차	적발	검차	적발	
합 계	480	1,371	99	970	57	401	42	
2017	160	391	31	260	21	131	10	
2018	160	460	33	356	17	104	16	
2019	160	520	35	354	19	166	16	

□ 단속 결과

- 우리본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운행제한(과적) 차량 예방·홍보 활동 및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도로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 O 과적차량으로 인한 피해 및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 및 운송관계 업체들에게 적정하중 운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음.
-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에서 총 1,371대를 검차하여 99대의 과적 차량 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 됨.
- 또한, 합동단속에 앞서 관내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16,716개 업체에 과적예방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이 많은 대형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사전예방,홍보를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 및 운송관계 업체의 준법정신 제고

□ 향후계획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원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 실시로 업무 역량 강화
- 운행제한(과적)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홍보 및 단속실시
- O 적발된 운행제한(과적)차량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태료 부과 등)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

【 처 분 요 구 사 항 】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ㄱ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4.)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공사감독자1)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안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에 의해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은 건축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quot;공사감독자"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표 1】 ㄱ 시설공사 현황

(단위: 천원)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도급자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	17.12.20.	17.12.22.	20.2.14.	94,750,400	주식회사 △△

그 건립공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생지침」에 ㈜건 축사사무소 ●●●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시설에 대한 확인결과 식자재동 인근 및 훼손지복구 지역에 2019. 11.에 식재한 잔디와 교목의시공 부적절로 다수 고사되어 있고 이에대한 개선을 위하여 하자보수 등 재 식재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고사된 채로 존치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채소동 및 과일동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이드북(한국전기공사협회, 2017년 1월 발행)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온도, 강우량, 일사량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30도 내외의 경사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태양광발 전설비를 확인한 결과 옥상면과 평행하게 시공되어 우기 시 물이 고이고 먼지가쌓여 정상 발전량인 80%에 못미치는 약 50%정도의 태양광에너지를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2】잔디 및 태양광 발전설비



잔디 고사 관목 고사







- [시정] ① 부적절한 식재로 인하여 고사된 잔디와 교목은 재 식재하시고, 태양광에너지의 발전효율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사각을 재조정하시고,
 -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ㄴ 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306호, 2020. 3. 31.)」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6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동 지침 제169조(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제2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1) 설계변경, 2) 공법의 변경, 3) 기술적 문제의 해결, 4) 기성고의 사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조치방안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4.)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 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에서 시행한 ㄴ 건립공사는 2018. 5. 9. ◎◎종합건설(주) 와 공사계약하에 2018. 5. 25. 착공하여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질조사당시 연암으로 조사된 구간에서 경암이 나와 [표1]과 같이 공사비를 변경 하여 2018. 9. 19. 계약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표 1】설계변경 내역

(단위: 천원)

공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토공사	62,679	260,136	증 197,457	
H-Pile공	21,968	68,243	증 46,275	

경암 구간은 흑막이 설치가 불필요한 구간이나 경암층 상부 토사구간을 감안한 흑막이벽 설치 시 공사비 절감 및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기존에 설계된 방식으로 시공하여 경암반 굴착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하였으며 단가 적용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기존 낙찰률 86.758%와 시공사가 요구하는 100%의 평균가격인 93.379%(60,176천원)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의 어려움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95%(61,220천원)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하였다.

- [주의] ① 암반선 등 공사여건 변경 시 현장실정에 맞는 경제적 방식을 결정 하여 시공하여 주시고,
 - ② 설계변경 업무에 대한 연찬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ㄷ(3-1단계) 관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고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거나 그 밖에 발주기간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67조(설계변경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합건설본부(○○부)에서는 2019.11.20.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8%인 "인천 ㄷ(3-1단계)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석축(1,672㎡)을 헐어 배수공 자재로 유용하고자 석축 헐기에 필요한 장비인 착암기 및 착암공을 설계서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착암기 및 착암공의 장비 조합은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및 사석 발파 공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로 현지여건 상 굴삭기를 통한 석축헐기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게 반영됨에 따라 약 61백만 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었고, 석축헐기에 따른 유용 석축자재를 석축 쌓기 현장 내 소운반 비용(약 24백만 원)과 배수공 유용석 집토 비용(약 17백만 원)의 증액사항을 설계서에 누락 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조경공 기초, 경계석 기초, 배수공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거푸집 시공이 합판거푸집으로 설계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합판거푸집에 대한 제작 인력 부족으로 공장제작 거푸집(유로폼) 사용하고 있어 현장여건을 반영한 유로품 자재로 변경적용 시 약 13백만 원의 공사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또한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ㄷ(3-1단계) 조성공사"의 잔디 붙임은 줄떼와 평떼로 구분되며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줄떼(10~30㎝간격으로 붙임)로 식재할 수 있다. 잔디 붙임 물량이 평떼 39,949㎡(붙임 단가 7,974원/㎡당) 및 줄떼 31,341㎡(붙임 단가 5,407원/㎡당) 설계서에 계상되어 있으나, 평떼 붙임 지역 중 일부(8,210㎡)가 경사가 완만한 녹지지역으로 줄떼 붙임으로 변경 시공하여도 평떼 시공 효과는 물론 약 29백만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여건과의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되었을 시에는 실정보고를 통한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변경(시공자 동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계약금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 원)

공 종	공 사 비(감)	공 사 비(증)	비고
계	103	41	감)62
석축 헐기	61	-	
석축 소운반	-	24	
유용석 집토	-	17	
거푸집 변경	13	-	합판 →유로품
잔디 붙임	29	-	평떼→줄떼

- (시정) 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게 시공자로부터 실정보고를 제출받아 설계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공사비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원활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추락사고 방지 시스템(비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내 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6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목적을 위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4.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따르면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공사시행 단계인 경우 및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스템 비계²)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합건설본부(△△부)에서는 2019.5.8.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38%인 "ㄹ공사"

^{2) &}quot;일체형 작업발판(이하"시스템 비계"라 한다)" 이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형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의 옹벽 및 구조물공(교량)에 대한 설계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강관비계(3개월 이하: 1,688m²)와 강관비계 다리(3개월 이하: 815m²)로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와 관련된 옹벽 및 구조물공의 강관비계(다리)는 감사일 현재 설치하지 않음에 따라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스템 비계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로 설계변경 적용 시 강관 비계다리도 제외가 가능함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의 절감 [43,377 천 원(제경비 포함)] 등의 실정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추락사고 방지 시스템 비계 설계변경(안)

(단위: 천 원)

공 종 명	단위		금 액(천원)		비고
0 0 0	· 근 ᅱ	당초 변경		증.감(-)	미끄
토목공사	1식	69,704	46,427	-23,277	
강관비계	1식	19,623	-	-19,623	1,688m²
강관비계다리	1식	50,081	-	-50,081	815 m²
시스템비계	1식	_	46,427	46,427	2,487 m²
제경비	1식	48,460	28,360	-20,100	
총 공사비		118,164	74,787	-43,377	

- (시정) ①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스템 비계로 설계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공사비의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원활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토공 [기존 석축(깬돌) 및 발파석] 유용계획 부적정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간 등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6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합건설본부(△△부)에서는 2018.5.8.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6%인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 개설공사"에서는 기존 석축(깬돌) 2,580㎡를 장비로 헐어건설 폐기물로 운반 처리(2,077톤)하도록 설계서에 계상하였고, 또한 토공 흙깍기시공 중 암 발파로 발생한 암석(2,044㎡)을 토공 성토(토사 대용) 재료로 사용도록설계서에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석축(깬돌) 및 발파암을 장비(브레이카)를 이용 30%로 소활(파쇄)하면 구조물 뒷채움 사석 및 잡석 [사석(2,416㎡) 및 잡석(627㎡) 별도 구입 하도록 내역서에 계상]으로 유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약 146백만 원)를 절감 [석축(깬돌) 폐기물 운반과처리비(개략 73백만 원), 사석과 잡석 구입비(개략 73백만 원)]할 수 있음에도 감사일현재까지 설계변경에 필요한 실정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기존 석축(깬돌) 및 발파석 재활용 계획

(단위: m²/m³/ton)

공 종 명	규 경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석축(깬돌)헐기	찰쌓기(기계)	2,580m²	2,580m²	1	
발파암	정밀진동제어발파	1,818 m³	1,818 m³	-	
발파암	진동제어발파(소규모)	226 m³	226 m³	-	
발파암소할(석축)	암유용(30% 소할)	0 m³	903 m³	903 m³	
잡석	150mm	627 m³	0 m³	-627 m³	기초잡석
사석		2,416 m³	96 m³	-2,320 m³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2,077톤	-	-2,077톤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2,077톤	-	-2,077톤	

- (시정) ① 기존 석축(깬돌)은 구조물 뒷채움 사석으로 재활용하여 공사비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공사비의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원활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공공사 완료에 따른 지적정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내 용

기반시설(도로 등)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하여 시설 공사를 마친 때에는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룔」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공사완료 공고 등) 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분할 신청), 제80조(합병 신청), 제81조(지목변경 신청) 등에 따르면 도로 등을 합병·분할·지목 변경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6조의2(공유토지의 지적정리)에서도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공부 정리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등을 통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토지의 합병,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최소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공익사업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토목부)에서는 "ロ 조성공사"등 3건은 도시관 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및 도로) 공사를 완료 하고도 관련 법률에 따른 완료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지적소관 청에 편입토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않아 당초 분할된 138필지로 관리 되고 있으며,

2019.6.30. 준공한 "ㅂ 개설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시설공사 완료공고를 2019.8.19. 하였다면 60일 이내 해당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 등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목변경 신청 등을 하지 않아 당초 분할된 171필지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7.11.11. 준공한 "시 사업(계산천)"은「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인천시 수질환경과에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지적소관청에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않아 당초 분할된 117필지로 관리하고 있어 공적장부에 대한 행정신뢰도 저하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다.

【표 1】도시계획시설 완료 공고 및 지목변경 현황

(단위: 필지)

공 사 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준공일	아 유교 교	지목 변경(필지)		비고
0 1 0	(백만원)	시 비기선	正の己	공고	전체	미변경	미끄
합 계					510	426	
ㅁ 조성공사	7,300	2015. 5. ~ 2018. 8.	2018.8.27.	-	4	2	
ㅇ 도로개설공사(3-1공구)	35,040	2009. 7. ~ 2019.12.	2019.12.24.	-	124	100	
ㅈ 도로확장	5,000	2018. 9.~ 2019.10.	2019.10.9.	1	65	36	
ㅂ 개설	39,180	2012.12. ~ 2019.6.	2019.6.30.	2019.8.	199	171	
ㅅ 사업	12,431	2016. 3.~ 2017.11.	2017.11.11.	-	118	117	

- (시정) 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하여 시설 공사를 마친 도시계획 시설(주차장 및 도로)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완료 공고)를 이행하여 주시고,
 - ② 행정절차에 따른 완료공고, 준공고시 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해당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조속히 이행하시 바랍니다.
 - ③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또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계획 등을 수립하여 미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 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을 제외한 건설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인 배치와 시험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공사	공사규모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200m²이상	중급이상 1인 이상 초급이상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200m²이상	초급 이상 1인 이상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제8조(품질시험기준)에는 건설 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의 품질시험기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부)에서는 "ㅈ 도로개설공사 등 4건" 중·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를 시행하면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착공 후에 건설업사업자에게서 제출 받아 미승인 하거나 지연 승인하였으며,

또한,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이므로 중·초급 이상 기술인을 각각 1명씩 2명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특급기술인 1명만을 배치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계약금액 (백만원) 기술인 배치여부 공 사 명 사업기간 제출일 승인일 비 $\overline{\mathbf{L}}$ 2018. 5. 8.~ 2023. 5. 6. 특급 1 초급 1 ㅈ 도로개설공사 29.507 2018.7.23. 2019.1.31. 지연 승인 2020. 4.10.~ 특급 1 ㅍ 도로확장공사 11,039 2020.4.10. 미승인 2023. 4. 9 2019. 4.24.~ ㅊ 건설공사 고급 1 1,802 2019.4.24. 미승인 및 기술인 부적정 배치 2020, 4.23, 중급 1 초급 1 2019. 6.20.~ ㅋ 증설공사 13,294 2019.6.28. 미승인 2021. 6.18

【표 1】품질시험계획 미 수립 현황

- (주의)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의 품질시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 기여하시기 바라며,
 - ②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법선정 사전 검토 미흡 및 선정절차 미 이행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내 용

「도로법」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수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내 자동차 전용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는「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관리대상 자동차 전용도로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관리 자동차전용도로 현황

도로명	도로개요	지하차도현황	신축이음장치형식
송도해안도로	L=5.92km	4개소 L=2,990m	탄성봉합재
경인직선화도로	L=2.6km	3개소 L=2,592m	볼트부착 고무판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는 해당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구간내 손상된 신축이음장치1)에 대하여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6건의 보수공사【표 2】를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¹⁾ 신축이음장치: 구조물의 신축(원인: 온도변화에 의한 수축·팽창, 콘크리트 건조수축, 활하중에 의한 이동·회전 등의 변위·변형 등)에 대응(2차응력을 줄이고 도로 평탄성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 장치

【표 2】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추진현황(2017~2019년)

연번	년도	공 사 명	도급사	공사개요	신축이음 장치 형식	공사기간	준공금액 (천원)
		합 계		L=491.8m N=88개소			398,320
1	2017	ㅌ 조인트 보수공사	□□토건㈜	L=110m N=17개소	탄성 봉합재	2017. 7.18.~ 2017. 9. 5.	47,551
2	2017	ㅍ 조인트 보수공사	㈜■■■■	L=21.6m N=6개소	"	2017. 9.11.~ 2017.11. 9.	26,445
3	2018	ㅎ 조인트 보수공사		L=97.0m N=18개소	"	2018. 5.14.~ 2018. 6.29.	62,155
4	2018	ㄲ 보수공사	(₹)∨∨∨∨	L=35.0m N=10개소	"	2018. 6.14.~ 2018. 8.12.	56,620
5	2019	ㄸ 신축이음 보수공사		L=108m N=19개소	"	2019. 6.11.~ 2019. 7.11.	70,653
6	2019	ㅃ 신축이음 보수공사	◀◀◀(합)	L=120.2m N=18개소	"	2019. 6.17.~ 2019. 7.30.	134,89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는 도로 봉합제를 이용한 신축이음 공사를 입찰참가자 제한(계약목적물과 동일 종류의 실적)이 가능할 정도의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는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건설 사업의 설계과정에서 특정(신)기술·공법·자재의 선정·채택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ㅌ 조인트 보수공사외 5건의 보수공사【표 2】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신축이음공법에 대한 특성(내 구성, 시공성, 현장적합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 수 집이나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운영지침」에 따른 자문위원회 자문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특정 공법을 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 (주의) ① 각종 공사에 반영되는 특정(신)기술·공법 등이 적정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훈계) 요 구

제 목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 시행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도로관리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2019년) ㅆ 지하차도내 신축이음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 계획수립 시 새로운 공사의 목적물이 이전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자보수 대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관련 조항에 따라 하자보수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같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6개소(2017년도 시행사업 3개소, 2018년도 시행사업 3개소)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ㅆ 지하차도내 조인트(신축이음) 보수공사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년도	사업명	공사개요	금액	공사기간	하 자 만료일	비고
1	2017	ㅆ 지하차도내 조인트보수공사	조인트보수 31개소 (L=166m, B=0.2m, h=0.08m)	47,551	2017.07.18. ~09.05.	2019.09.13.	3개소
2	2018	ㅆ 지하차도내 조인트보수공사	조인트보수 18개소 (L=97m, B=0.43m, h=0.08m)	62,155	2018.05.14. ~06.29.	2020.07.04.	3개소
3	2019	ㅆ 지하차도내 신축이음 보수공사	조인트보수 31개소 (L=108m, B=0.4m, h=0.08m)	70,653	2019.06.11. ~ 07.11	-	6개소 포함시공 (약 12,716천원)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 (주의) ①「지방계약법」에 따른 하자점검 및 하자보수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중복사업시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계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아래 관련자를 훈계처분 합니다.

(관련자)

시설8급 ●●●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차집관로 용량 산정 부적정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 부서 △△부

내 용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07호)」에 따르면 합류식지역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차집관로의 계획하수량은 우천시 계획오수량1)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3Q)]을 기준으로 하며, 오수관로의 계획하수량은 계획시간최대오수량(Q)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하수량과 실제 발생하수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오수관로의 관경결정 시계획하수량에 여유율을 둘 수 있고, 여유율은 일반적으로 관경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배수구역의 유하시간 차이로 인한 여유율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기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5년)」에는 차집관로 용량결정2)을 하수도설계기준상 우천시 계획하수량[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3Q)] 보다 다소 적은 우천시 계획하수량[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3Q)에서 공장폐수량 제외(3배수가 아닌 1배수 적용)]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오수관로 규모는 계획시간최대오수량(Q)을 적용하되 관로 구경에 따라 계획시간최대오수량에 대해 약 25~100%3) 정도의 여유율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다.

¹⁾ 우천시 계획오수량은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함(하수도설계기준 2019.) :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3Q) = [(1인1일최대오수량×계획인구 + 공장폐수량+지하수량+기타배수량)의 1시간당 수량 × 1.3~1.8배] × 3배

²⁾ 차집관로 용량결정(201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러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짜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1】을 추진하면서「하수도설계기준」과「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15년)」에서 기준하고 있는 차집관로의 규모 산정 시 오수관로에 적용되는 여유율을 반영4)하여 설계·시공 하였다.

【표 1】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현황(관계사업 포함)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도급액 (천원)	도급사	용역기간
해당 용역	ᄍ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D300 ~ 1,100mm L=1,750m 설계	140,487		2016.8.30. ~ 2018.3.27.
해당 공사	ᄍ 신설공사	D1,500mm, L=1,368m D400 ~ 1,000mm L=800m	3,019,237	㈜ 종합건설	2018. 5.15. ~ 2019.11.14.
연계 용역	 차집관로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기 설치된 석남유수지 차집관거(현재, 월미차집관거 연결됨)를 처리장으로 직접 연결 	D700~1,600mm L=1,851m 설계	389,400	㈜☑☑ 종합기술	2018.06.12. ~ 2019.06.11. (용역일시정지: 2019.2.21.)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 (시정) 해당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용역수행중인「ㅉ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의 차집관로 규모 결정 등은 하수도설계기준 및 인천광역시 하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설계용역 감독 시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³⁾ 오수관로 여유율(201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구 분	소구경관로	중구경관로	대구경관로
관 경	250~600mm	700~1,500mm	1,650~3,000mm
여유율	약 100%	약 50~100%	약 25~50%

⁴⁾ 여유율 반영: 북측관로 1,500mm구간(최대 125%적용), 남측관로 500mm구간(최대 308%적용)

⁻ 관로규모 확장 현황: 북측관로 1,200~1,350mm → 1,500mm적용, 남측관로 400 → 500mm적용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교량 승강기 안전관리 소홀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내 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승강기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등)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관한 규정' 작성 등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월 1회 이상) 실시 및 정기검사(연 1회 이상), 정밀안전검사(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3년마다) 등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 및「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 고유번호판,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 등 표준부착물을 승강기 내부에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같은 운영규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엘리베이터 출입문 전면 바닥에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붙이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림 1】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부착 예시

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 〈\〉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양대교 등 5개소에 설치된 교량 승강기 16대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승강기 운행 및 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각종 법정 점검·검사는 실시하였으나 검사합격증명서, 고유번호판,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 및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등의 표준부착물을 부착하지 않는 등 교량 승강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교량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현장 점검 결과 [2020. 5. 7. 기준]

		2 -1-1	3 →1 —1	ماحا	운행	사고	각종 :	검사 실	시현황	Ŧ	준부착	물 부착현형	
Q H	대상 시설물	승강기 호기 (고유번호)	승강기 종류 (용도)	안전 관리자 선임	운행 및 관리 규정 작성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자체 점검	정기 검사	정밀 안전 검사	검사 합격 <i>증</i> 방서	고유 번호판	비상 통화장치 사용방법	안전 이용 안내 표지
		1호기 (2120-146)	승객용 (승객용)	0	×	0	0	0	대상 아님	×	0	0	×
	계양대교 (귤현타워)	2호기 (2120-147)	"	0	×	0	0	0	"	×	0	0	×
	승강기 [총4대]	3호기 (2120-148)	"	0	×	0	0	0	"	×	0	×	×
		4호기 (2120-149)	"	0	×	0	0	0	"	×	0	×	×

		2 =2 = 2	2 = 2 - 2	-1-1	운행	사고	각종 :	검사 실	시현황	Ŧ	준부착-	물 부착현화	
연 번	대상 시설물	승강기 호기 (고유번호)	승강기 종류 (용도)	안전 관리자 선임	및 관리 규정 작성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자체 점검	정기 검사	정밀 안전 검사	검사 합격 증명서	고유 번호판	비상 통화장치 사용방법	안전 이용 안내 표지
		1호기 (2123-151)	승객용 (장애인용)	0	×	0	0	0	대상 아님	×	0	부착상태 불량	0
2	시천교 승강기	2호기 (2079-399)	"	0	×	0	0	0	"	×	0	"	0
	[총4대]	3호기 (2079-400)	"	0	×	0	0	0	"	×	0	"	×
		4호기 (2123-152)	"	0	×	0	0	0	"	×	0	"	0
	백석대교	1호기 (2125-854)	승객용 (장애/전망용)	0	×	0	0	0	"	0	0	×	0
3	승강기	2호기 (2125-855)	"	0	×	0	0	0	"	0	0	×	0
	[총3대]	3호기 (2125-856)	"	0	×	0	0	0	"	0	0	×	0
	백운	1호기 (2094-338)	승객용 (장애/전망용)	0	×	0	0	0	"	×	0	0	×
4	고가교 승강기	2호기 (2094-339)	"	0	×	0	0	0	"	×	×	0	×
	[총3대]	3호기 (2094-989)	"	0	×	0	0	0	"	×	0	0	×
5	만석 고가교	1호기 (2213-774)	승객용 (장애/전망용)	0	×	0	0	0	"	0	0	×	×
J	승강기 [총2대]	2호기 (2213-775)	"	0	×	0	0	0	"	0	0	×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 (시정) ①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인 '승강기 운행 및 관리규정'을 작성·비치하시고,
 - ② 미 부착된 표준부착물은 승강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③ 향후 교량 승강기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종합건설본부 관리대상 교량 승강기 현황

연 번	대상 시설물	종류 (용도)	운행 층수	수량	주소	제조업체	유지관리 업체	운행 유효기간	비고
1	계양대교 (귤현타워) 승강기	승객용 (승객용)	1~4층	4대	계양구 아라로 548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	세계기전 써비스㈜	2019.08.16. ~ 2020.08.15.	2011년 설치
2	시천교 승강기	승객용 (장애인용)	1~2층	4대	서구 검바위로 2	㈜새한 엘리베이터	세계기전 써비스㈜	2019.08.12. ~ 2020.08.11.	2011년 설치
3	백석대교 승강기	승객용 (장애/전망용)	1~2층	3대	서구 봉수대로 1117-32	오티스 엘리베이터(유)	세계기전 써비스㈜	2020.01.21. ~ 2021.01.20.	2012년 설치
4	백운고가교 승강기	승객용 (장애/전망용)	1~2층	3대	부평구 마장로 68 인근	현대 엘리베이터㈜	세계기전 써비스㈜	2020.04.12. ~ 2021.04.11.	2014년 설치
5	만석고가교 승강기	승객용 (장애/전망용)	1~2층	2대	중구 제물량로 329-1	㈜지에스이 엘리베이터	세계기전 써비스㈜	2019.08.06. ~ 2020.08.05.	2019년 설치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계양대교(귤현타워) 승강기 전경



시천교 승강기 전경



백석대교 승강기 전경



백운고가교 승강기 전경



만석고가교 승강기 전경

제 목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건립 관련 행정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과 계 부 서 ○○부

내 용

시 본청,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등의 장은 종합공사가 아닌 기타 공사 중추정금액1)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제6조에 따라계약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인천광역시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계약부서의 장에게계약을 의뢰하기 전에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 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종합건설본부 ○○부는 [표 1]과 같이 당초 공업분야 각 공사의 발주를 조달청에 공사 원가검토 및 계약체결을 요청할 계획으로 일상감사만 의뢰하고 계약심사는 요청하지 않았고, 소방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는 발주방법을 종합건설본부 자체 발주사업으로 변경하였다.

^{1) &}quot;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부가 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건립 관련 공업분야 공사(표1)는 「인천광역시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계약심사를 이행했어야 하나, 일상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하기까지 2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인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 없이 입찰공고 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소홀히 하였다.

【표 1】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건립 관련 공업분야 공사의 행정절차 이행현황

(단위: 백만 원)

해당분야	설계금액	공사	일상감사	실시현황	계약심사	계 약	입 찰
예정군약	(추정가격)	발주 방법	감사의뢰일	결과통보일	이행여부	의뢰일	공고일
전기공사	25,449 (10,507)	조달청 계약의뢰	2017.10.11.	2017.10.17.	미 이행 (제외대상()	2017.12.18.	2018. 1.18.
기계소방공사	12,627 (10,731)	조달청 계약의뢰	2017.10.19.	2017.10.26.	"	2017.12.15.	2018. 2. 8.
소방전기공사	4,045 (3,508)	당초)조달청 계약의뢰 변경)자체 발주	2017.10.11.	2017.10.17.	미 이행 (제외대상×)	2017.12.18.	2017.12.21.
정보통신공사	9,376 (5,254)	당초)조달청 계약의뢰 변경)자체 발주	2017.10.11.	2017.10.17.	"	2017.12.29.	2018. 1.18.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 (주의) ①「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내 용

◇◇부에서는 송도해안도로 및 루원·봉수지하차도의 전기, 기계시설물 유지 관리와 도로 순찰, 낙하물 제거, 터널시설물 점검 등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0 년 4월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전기안전관리자와 도로관리원 총 18명을 채용 하였다.

1. 응시자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에도 1차 서류심사 및 2차면접시험을 토대로 상위 득점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부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7년과 2018년 응시자 18명에 대하여 1차 채용공고문에서 명시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채용분야	공 고 일	응시인원(명)	채용인원(명)	채 용 일	비고
소 계		18	6		
도로관리원	2017.12.01.	13	2	2018.01.01.	
	2018.01.05.	3	2	2018.01.24.	
전기안전관리자	2018.01.26.	1	1	2018.02.26.	
	2018.06.11.	1	1	2018.07.01.	

【표 1】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미이행 현황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제11조 제2항에서는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며, 필요시에 결격사유 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를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부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8년과 2020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예정인 총 10명에 대한 결격여부를 조회하지 않았다.

근로연도	공고일	채용분야	채용인원(명)	채용일	비고
	소 계		10		
	2017.12.01.	도로관리원	2	2018.01.01.	
2018	2018.01.05.	전기안전관리자	2	2018.01.24.	
2010	2018.01.26.	"	1	2018.02.26.	
	2018.06.11.	"	1	2018.07.01.	
2020	2019.10.28.	전기안전관리자	2	2020.01.06.	
2020	2013.10.20.	도로관리원	2	2020.01.00.	

【표 2】 채용예정자 결격여부 조회 미이행 현황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의 반환 기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채용된 구직자 총 28명의 채용서류를 반환 명시일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채용되지 아니한 구직자의 채용서류 미파기 현황

근로연도	공고일	채용분야	반환대상자(명)	채 용 일	채 용 서 류 반환기간 명시일	비고
	소	계	28			
2017	2017.01.04.	도로관리원	3	2017.01.24.	180일	
2018	2017.12.01.	도로관리원	11	2018.01.01.	90일	
2010	2018.01.05.	전기안전관리자	1	2018.01.24.	90일	
2020	2019.10.28.	전기안전관리자	2	2020.01.06.	90일	
2020	2019.10.20.	도로관리원	11	2020.01.00.	90 z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직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및 제7조의8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참·조퇴 및 외출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고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7일째 되는 시점부터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시간단위로 실시하는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1조 제1항에서는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2017 단체협약서」(인천광역시) 제51조에서는 조합원에게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자체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의 연 7일 이상의 병가 사용자에 대한 병가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총 6명의 직원이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표 1】소속 공무원 병가사용 부적정 명세

			사용	구 분		보전정	=. = =
소 속	직급	성명	사용 연도	복무관리시스템 병가(입력)사용일	실제병가 사용일	사용일	부 적 정 사 유
⊚⊚ 부	행정6	$\Diamond \Diamond \Diamond$	2017	34일 3시간30분	34일 3시간30분	5일 7시간	진단서 없이 연 누계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
	행정7		"	60일	62일	2일	2.15.~2.17.(3일), 2.20.~4.14.(54일) 2회에 걸쳐 3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면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미산입
	행정7		"	61일	61일	1일	3.8.(1일), 8.18.~10.16.(60일) 2회에 걸쳐 병가 61일을 사용
♦♦부	기계 운영7	000	"	60일	73일	13일	7.7.~9.17.까지 총 4회에 걸쳐 3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면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미산입
	운전7	777	2019	58일 7시간	70일	11일 3시간	· 2.25.~4.1.까지 총 4회에 걸쳐 3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면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미산입 · 진단서 없이 연 누계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
	공무직		2017	9일	9일	3일	진단서 없이 연 누계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의사의 진단서 첨부없이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고,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 및 법정 병가일수를 초과한 병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2 제4항 및「지방공무원 인사실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결근 으로 보아야 한다. 결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2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제4항에 따라 봉급과 수당(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금액)을 감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도 「2017 단체협약서」(인천광역시)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자체 공무원 복무조례 및급여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따른 ◎◎부, ◇◇부 공무원과 ◇◇부 공무직 근로자의 연가 보상비를 포함한 개인별 화수금액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병가 사용 부적정에 따른 개인별 환수금액 산출내역

(단위:원)

소속	직 급	성 명	연도	환수금액	연가보상비	잍	l액산출내역		비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연도	친구급객	건기보였니	소 계	봉 급	수 당	(환수일수)
	합 계			3,237,710	1,832,870	1,404,840	1,280,880	123,960	
◎◎부	행정6	$\Diamond\Diamond\Diamond$	2017	625,500	1	625,500	578,920	46,580	5일
	행정7		"	189,730	189,730	-	-	-	2일
	행정7	巴巴巴	"	115,460	-	115,460	106,750	8,710	1일
◇◇부	기계 운영7	000	"	978,820	487,410	491,410	453,410	38,000	9일
	운전7	777	2019	1,068,770	1,068,770	-	-	-	10일
	공무직		2017	259,430	86,960	172,470	141,800	30,670	3일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 시고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업무연찬 실시 등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3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고도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등 병가를 부적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지급액, 봉급과 수당의 일액산 출액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속히 환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유연근무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bigcirc\bigcirc$ 부, \triangle 부, \diamondsuit 부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서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등의 유형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명시하고, 특히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기관 외부에서 출장, 회의참석 등으로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복무관리시스템 등록없이 회의참석 서명부, 출장 복명서 등으로 갈음하도록 유연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4개 부서의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기간 중 유연근무를 신청한 총 29명(2019년 20명, 2020년 9명)의 복무관리시스템상 출·퇴근 기록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총 14명(2019년 11명, 2020년 3명)이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유연근무자 복무관리시스템 미등록자 현황

연도별	소속	직 급	성 명	유연근무기간	유연근무시간	사유	미 등 록 일 수
2019	○○부	행정5	000	3.12.	08:00~17:00	출퇴근편의	1
				6.11.~6.14.	월~금 08:00〜17:00	"	1
		행정7	000	9.23.∽12.5.	월~금 09:30~18:30	임신·육아	7
		행정7	000	10.14.~10.18.	월~금 08:00〜17:00	학업및자계발	1
		행정7	000	10.1.∽11.13.	화,수 08:00~17:00	"	11
	스스부	시설4	000	9.1.~12.31.	월~목 08:00~18:00 금 08:00~12:00	효율적인 업무수행	7
		시설6	900	4.8.~4.30.	월~금 08:30~17:30	임신·육아	1
				5.6.~6.30.	월~금 08:30~17:30	"	21
				7.16.~7.31.	월~금 08:30~17:30	"	5
	◇◇부	통신7	900	5.2.~7.31.	월~금 09:30~18:30	임신·육아	8
				9.4.~10.31.	"	"	5
				11.4.~11.29	"	"	4
				12.3.~12.31	"	"	2
		공업7	999	3.18.~4.19.	월~금 09:20~18:20	임신·육아	14
				4.22.~5.31.	,,,,,,,,,,,,,,,,,,,,,,,,,,,,,,,,,,,,,,,	"	13
				6.3.~7.31.	"	"	19
				8.2.~10.31.	"	"	29
				11.4.~12.31.	"	//	30
		시설5	000	5.1.~5.31.	월~금 08:30~17:30	효율적인업무수행	11
		11146	A A A	6.3.~6.28.	// // // // // // // // // // // // //	출퇴근편의	2
		시설6	000	3.4.~4.30.	월~금 10:00~19:00	임신·육아	7
				5.13.~5.24.	//	//	2
				5.30.~7.31.	"	"	8
				8.5.~9.11.	"	"	5
				9.18.~11.29.	"	"	12 7
		HHC	-	12.4.~12.31.	"	<i>"</i>	
		시설6	000	2.11.~5.13.	월~금 10:00~19:00	기타	11
2020	◇◇부	시설7	000	1.20.~1.31.	월~금 08:30~17:30	출퇴근편의	1
		통신7	000	1.2.~1.9.	월~금 09:30~18:30	임신·육아	1
		공업7	000	1.2.~1.31.	월~금 09:20~18:20	임신·육아	13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등 복무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하자만료검사에 관한 사항

기 과 명 종합건설본부

과 계 부 서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 2. 하자보수보증금 및 3. 하자검사 규정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총무부에서는 총 626건의 하자만료검사 대상 사업 중 [별표 1]과 같이 총 6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만료검사를 부적절하게 실시하였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반환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므로 최종검사 완료 후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 [별표 1]과 [별표 2]와 같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관련규정에 따른 하자만료검사 이행 및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등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보수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하자만료검사 부적정 현황

연번	계약명	하자담보 종료일자	하자만료검사 완료일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	비고
1	남항준설토 투기장 주변 도로개설공사[교량공사] 2건	2017.04.28	2017.03.27	미이행	
2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2건	2017.07.15	2017.06.12	미이행	
3	북항고가차도 건설공사 3건	2017.11.18	2017.11.02	미이행	
4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소방기계공사	2017.07.09	2017.06.08	미이행	
5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소방(기계 및 전기) 공사 감리 용역	2017.07.15	2017.06.08	미이행	
6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립 공사 2건	2017.08.25	2017.08.01	미이행	
7	석암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017.03.15	2019.02.01	미이행	
8	우회고가교 그루빙 설치공사	2017.05.25	2019.04.28	미이행	
9	부평구 굴포로외 2개 노선 도로유지보수공사	2017.06.18	2017.05.29	미이행	
10	2015 남구 인하로외 1개노선 도로유지보수공사	2017.06.18	2017.05.29	미이행	
11	2015 남동구 비류대로외 1개소 도로유지보수공사	2017.06.21	2017.05.29	미이행	
12	관내 시설물(교량, 터널) 보수보강공사	2017.08.19	2017.07.25	미이행	
13	능해고가교 그루빙 설치공사	2017.08.25	2017.07.25	미이행	
14	2015년 북부권역 소규모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2017.08.27	2017.08.04	미이행	
15	2015 미추홀대로외 3개노선 도로유지보수공사	2017.08.31	2017.08.11	미이행	
16	2015 송도해안도로 지하차도 조인트보수공사	2017.09.21	2017.09.28	미이행	
17	송도지하차도 그루빙설치공사	2017.11.03	2017.10.11	미이행	
18	2015 북부권역 소규모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2차)	2017.11.10	2017.10.18	미이행	
19	2015년 북부권역 소규모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3차)	2017.11.16	2017.10.16	미이행	
20	가좌ic 고가교 그루빙 설치공사	2017.11.22	2017.10.26	미이행	
21	2015년 서구 북항 배후도로 유지보수공사	2017.11.24	2017.10.24	미이행	
22	하야교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2017.11.25	2017.10.11	미이행	

연번	계약명	하자담보 종료일자	하자만료검사 완료일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	비 고
23	2016년 드림파크로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017.11.28	2017.10.16	미이행	
24	신촌교등 8개소 교면표장공사	2017.11.30	2017.10.10	미이행	
25	2015년 동구 인중로외 1개소 도로유지보수공사	2017.12.01	2017.11.10	미이행	
26	2015 남부권역 소규모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2차)	2017.12.01	2017.11.07	미이행	
27	2015 남부권역 소규모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3차)	2017.12.06	2017.11.13	미이행	
28	부평구 부영로외 3개노선 도로유지보수공사	2017.12.08	2017.11.22	미이행	
29	2015년 드림파크로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2017.12.09	2017.11.16	미이행	
30	만석고가교 교면포장공사	2017.12.15	2017.11.23	미이행	
31	동막교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2017.12.15	2017.11.23	미이행	
32	2016년 남부권역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017.12.19	2017.11.07	미이행	
33	2016년 남부권역 노면표시 도색공사 2차(연간단카)	2017.12.20	2017.11.07	미이행	
34	가좌IC고가교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2017.12.21	2017.11.23	미이행	
35	2016년 북부권역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차)	2017.12.25	2017.11.09	미이행	
36	2016년 무인교통단속용 차량검지기 보수공사(2차)	2017.12.25	2017.11.22	미이행	
37	2014 남부권역 맨홀높이 조정공사	2017.12.29	2017.11.22	미이행	
38	2014년 북부권역 맨홀높이 조정공사	2017.12.29	2017.11.22	미이행	
39	인천 서구~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 신호등공사	2018.01.10	2018.01.11	미이행	
40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립공사 기계	2018.01.21	2017.12.11	미이행	
41	송도지하차도 미끄럼방지시설 공사	2018.05.08	2018.04.10	미이행	
42	루원지하차도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공사	2018.05.08	2018.04.10	미이행	
43	동춘지하차도 케이블 보수공사	2018.06.13	2018.04.10	미이행	

연번	계약명	하자담보 종료일자	하자만료검사 완료일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	비 고
44	2016년 동구 방축로외 1개소 도로유지보수공사	2018.11.14	2018.10.16	미이행	
45	2016년 남구 소성로외 1개소 도로유지보수공사	2018.11.21	2018.10.16	미이행	
46	2016년 중구 축항대로 도로유지보수공사	2018.11.22	2018.10.16	미이행	
47	2016년 서구 원당대로의 1개소 도로유지보수공사	2018.11.27	2018.10.19	미이행	
48	2016년 연수구 능허대로외 4개소 도로유지보수공사	2018.11.30	2018.10.16	미이행	
49	2017년 북부권역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018.12.18	2018.12.20	미이행	
50	2016 교면보수 포장공사	2018.12.21	2018.12.26	미이행	
51	인천 북부지역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018.12.25	2018.12.26	미이행	
52	인천종합건설본부 환경개선계획에 따른 도로관리부 천장보수공사	2019.02.27	2019.01.29	미이행	
53	2016 송도고가교 보수보강공사	2019.04.30	2019.03.18	미이행	
54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설치	2019.05.01	2019.04.02	미이행	
55	2017년 남구 매소홀로외 3개노선 도로유지보수공사	2019.07.20	2019.07.22	미이행	
56	2017년 부평IC고가교외 4개소 보수공사	2019.10.20	2019.09.26	미이행	
57	고향의 강 선도사업(계산천)	2019.11.19	2019.11.28	미이행	
58	2018년 인천대로 노면표시 도색공사(연간단가)	2019.12.04	2019.09.26	미이행	
59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2019.12.10	2019.12.23	미이행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하자보수보증금 현황

(단위 : 원)

연번	계약명	금액	납입자	하지담보 종료일자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	비고
1	동춘롤러경기장 보수 정보통신공사	308,060	(A)OOOO	2014.04.09.	미이행	세입 조치
2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지열설비	10,955,200		2017.12.31.	미이행	보관중
3	2016 관선고가교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7,183,200	(F) (B)(B)(B)	2019.05.09.	미이행	보관중
5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정보통신공사	525,260		2020.03.31.	미이행	반환 완료
4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소방기계설비 설치공사	1,358,170	11111	2020.06.26.	미이행	보관중
6	구월농산물 기계소방공사 관급자재(HFC-23) 구입	9,038,450	••••(주)	2022.10.29.	미이행	보관중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제 목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미흡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의 소관 물품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²⁾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2)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르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물품 불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해 1회 이상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물품 불용결정 처리 공문에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거"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용물품목록, 불용물품사진, 차량이력카드 및 자동차등록증 등만을 관련 공문에 첨부하고 있을 뿐'불용결정통보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고, 불용품 폐기 시에도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불용품의 폐기) 규정에 의거"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용물품 현황만을 관리하고 있을 뿐'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입회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표]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현황

연도	물품명	수량	불용결정일	불용결정사유	처분일	처분	비고
	컴퓨터	52	2017.06.20.	내구연한 초과	2017.06.23.	매각	
	과적단속차량 등	8	2017.06.27.	내구연한 초과	2017.08.31.	매각	
2017	토목시험장비	30	2017.06.30.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2017.07.26.	매각	
	컴퓨터	111	2017.07.10.	내구연한 초과	2017.07.11.	매각	
2018	쇼파 등	144	2018.03.12.	고장, 파손, 내구연한 초과 등	2018.03.13.	폐기	
	덤프트럭 등	4	2018.05.08.	내구연한 초과	2018.08.22.	매각	
2019	봉고Ⅲ	2	2019.06.28.	내구연한 초과	2019.09.19.	매각	
2020	컴퓨터	5	2020.02.11.	내구연한 초과	_	매각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시 '불용결정통보서', '불용품폐기(해체) 조서' 작성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미술품 보존 · 관리 소홀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91조 규정에 따르면「지방재정법」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 제91조에 따라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IV.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 기준에 따르면 미술품 소장·관리 부서에서는 보존·관리 시 미술품 현품에 명제표를 부착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고, 등급과 무관하게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은 취득후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 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하고, 가격 재평가 시A, B 등급으로 분류된 작품은 각 분야별로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실물감정을 의뢰하며, C, D 등급 미술품은 자치단체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12월 31일 현재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술품 대장에 정리하고, 점검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②◎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보유중인 9개미술품 모두 취득 후 5년이 지났음에도 가격 재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취득한 '석양(사진, 유재형 作)'외 3개 미술품에 명제표를 부착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1999년 취득한 '백학도(한국화, ⑤⑤⑥ 作)외 4개 미술품은 일부 사항을 누락하여 명제표를 부착・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자체점검 및 망실·훼손 등에 대한 처리 등 관리실태 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가격 재평가 미실시 및 명제표 관리 소홀 미술품 현황

부문명	작가명	작품명	취득일자	상태	가 격 재평가	재물조사	명제표	
	미상	미상	2015.02.05.	양호			미부착	
사진	000	건조장	1999.03.25	양호		미실시	일부누락	
사선	000	석양	1999.03.25	양호	미실시	I 미설시	미글시 미글시	미터카
	000	석양	1999.03.25	양호			미부착	
	000	추경	1999.06.05	양호			미부착	
한국화	000	백학도	1999.06.05	양호				
- 인국화 	000	매일생환불매향	1999.06.05	양호	미실시	미실시	이버드라	
	000	란지론묵죽	2000.04.10	양호			일부누락	
서양화	000	풍경	1999.06.05	양호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보유 미술품 관리실태 점검을 매년 이행하시고, 취득 후 5년이 지난 미술품에 대한 가격 재평가를 실시하여 주시며, 관리번호·작품명· 작가명·제작연도·내용·규격 등이 표시된 명제표를 제작·부착하여 미술품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자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도매시장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옥외 공간 조화와 예술성을 갖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감 제고를 위해 미술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다.

1.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의 교부, 제안서의 제출,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절차, 협상 진행, 계약 체결과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표 1]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입찰공고 P 입찰등록 및 A 제안서 평가 P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P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적 대 상							
	기준	공고기간					
추정기	가격 1억 미만	10일					
추정기	가격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일					
추정기	가격 10억 원 이상	40일					
긴급	공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공고기간은 입찰 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제출일)을 제외한 기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미술작품 제작·설치 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표 2]와 같이 긴급입찰공고 하였다.

[표 2]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전 건립사업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고문

공고			사업비	
97	입찰공고게시일	응모등록마감일	제안서접수마감일	
최초공고	2019.6.26	2019.7.1	2019.7.22	1,637백만 원
정정공고	2019.7.2	2019.7.3	2019.7.23	

[※]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자료

정정공고문의 입찰공고 기간(2019.7.3.~2019.7.22.)은 20일로 긴급공고기간 10일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없는 응모등록(2019.7.3.) 절차를 추가하여 응모등록 시 응모참가자격인 주민등록 초본(주소 확인용), 미술협회회원 증명서, 미술작품 설치금액 1/2이상의 미술작품 제작·설치 실적, 미술 작품 수상 실적을 제출받았다. 이중 해당 공모 미술작품 설치금액 1/2이상의 미술작품 제작·설치 실적, 미술작품 제작·설치 실적, 미술작품 제작·설치 실적, 미술작품 제작·설치 실적, 미술작품 수상실적은 제안서 평가의 정량적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 제안서 접수 때는 미술작품만 제출받아 응모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안서 접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입찰공고게시일(2019.7.2.) 이후 다음날(2019.7.3.)에 응모등록을 마감하여 공고 기간은 0일로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2. 재공고 절차 미준수

「지방계약법시행령」제33조(입찰공고) 제2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취소 공고를 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공고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경우 공고기간은 남은 일수에 5일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의 정량적 평가 분야 배점항목 및 배점한도의 변경 사항은 경미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안서 평가항목 변경 결재 후 원래의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였어야 하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제안서 평가항목 변경 결재, 취소 공고, 새로운 공고 절차 없이 [표 3]과 같이 정정공고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ſΨ	31제아서	평가항목	배전표	벼경	내여
1 ===	기계하기	경기정국	메뉴 파	アづ	네

구	분	최초공고 평가항목			정정공고 평	명가항목	
		소 계		10	소 계		10
기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3건 이상	5		5건 이상	10
술	정 량 적	-미울고요 물지요그기 1/2이상 제작·설치 수행실적	2건	4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4건	8
	평가분야	〒802分	1건	3	1/20 상 제작·설치 수행실적 또는 전국	3건	6
평	(계량화)	 •전국 규모미술대전	3건 이상 5 규모미술대전 수상		2건	4	
가		수상경력 (우수상이상)	2건	4	85(TT8V18)	20	+
		(TTÖVIÖ)	1건	3		1건	2

3. 제안서 평가 평가항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1)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표 4]와 같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제안서평가 시 [표 5]와 같이 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80점, 가격평가 10점을 배점기준으로 정하고 평가하여 정성적 평가의 배점한도를 60점에서 80점으로 20점을 상향하여 가감범위 10점을 초과하였다.

¹⁾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 4.제안서의 평가

또한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프로를 초과할 수 없으나 평가항목을 1개로 구성하여 배점한도를 초과하였다.

[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_ "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u></u> Л				100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능 력 평 가 정성적 용역		' 0‡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평 가 정성적 용역 평 가 · 분 야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	!가분야		20	

[표 5] 종합건설본부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11 🗀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소 계		10	
			5건 이상	10	
	정 량 적	│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4건	8	
	평가분야 (계량화)	1/2이상 제작·설치 수행실적 또는 전국 규모미술대전 수상	3건	6	■ 계약부서 평가
기수	,,	경력(우수상이상) 	2건	4	
술능			1건	2	
력		소 계		80	
평 가		■농산물시장 이미지와 부합여부	<u> </u>	25	
	정성적 평 가	■조화성, 융화성	■조화성, 융화성		■ 평가위원이 평가
	항 개 분 야	■다양성, 창의성(독창성)		15	• 8기위전에 8기
		■효과성, 표현력		15	
		·안정성, 내구성		10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_	10	■ 계약부서 평가

4. 제안서 평가결과의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기 과 명 종합건설본부

과 계 부 서 ◇◇〉부

내 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와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대가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와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에 따르면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등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제출일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 체결일이며 가입 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되어있다.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표1]과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밀안전진단용역, 정밀점검용역, 정기안전점검용역 35건을 시행하면서 도급사가 손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내역서에 보험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용역 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표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현황

연번	사업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	업체명
1	2017. 동춘지하차도 외 8개소 정밀점검용역	55,492	2017-04-05	
2	간석고가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119,513	2017-04-25	
3	신북항고가교 외 8개소 정밀점검용역	138,414	2017-05-30	
4	천대고가교 외 9개소 정밀점검용역	137,649	2017-05-31	
5	금산IC교 외 8개소 정밀점검용역	134,970	2017-06-01	
6	숙골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42,834	2017-11-27	
7	2018. 하반기 제3종시설물(신촌교 외 35개소) 정기 안전점검용역	68,031	2018-11-21	
8	2018. 하반기 시천교 외14개소(1종) 정기안전점검용역	68,282	2018-11-22	
9	2018. 장제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86,137	2018-03-27	
10	2018. 우회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29,590	2018-04-09	
11	2018. 장수고가교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85,966	2018-04-25	
12	2018. 아트센터교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하자만료)	83,586	2018-05-02	
13	2018. 송도국제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83,594	2018-04-24	
14	2018. 능해고가교 외 5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70,035	2018-04-24	
15	2018. 상반기 금산IC교 외 14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64,060	2018-06-15	
16	2018. 초지대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81,700	2018-04-27	
17	2018년 인천대로 용현교 외10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32,380	2018-10-01	
18	2018. 상반기 만석고가교 외 17개소정기안전점검용역	39,553	2018-06-07	
19	2019년 상반기 장제고가교 외 23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110,360	2019-03-19	
20	2019년 가좌IC고가교 외 6개소 정밀점검용역	86,477	2019-03-21	
21	2019년 능해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81,498	2019-04-01	
22	2019년 백석대교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77,110	2019-03-22	
23	2019년 왕길고가교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78,874	2019-04-10	
24	2019년 남동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82,625	2019-04-09	
25	2019년 관선고가교 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	72,449	2019-04-03	
26	2019년 신북항고가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69,928	2019-04-02	
27	2019년 상반기 제3종시설물(신촌교 외 44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85,520	2019-03-22	
28	2019년도 금산IC램프 정밀안전진단용역	114,568	2019-06-11	
29	2019년 가좌IC고가교 외 24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134,758	2019-08-22	
30	2019년 계양대교 외 33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104,600	2019-08-21	
31	2019년 청량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44,310	2019-03-15	
32	2019년 송도육교 외 1개소 성능평가용역	39,249	2019-05-17	
33	2019년 하반기 제3종 시설물(신만수교 외 11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23,751	2019-09-10	
34	2019년 하반기 제3종 시설물(신촌교 외 23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26,498	2019-09-10	
35	2019년 하반기 제3종 시설물(인천대로) 및 일반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23,994	2019-10-01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엔지니어링사업 용역손해배상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청소용역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내 용

1. 2018년 인천대로 청소용역 1·2차 분리 시행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및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체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중단 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2018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재배정된 예산 집행 잔액을 반납처리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19년 예산으로 계약 및 집행하여야 하나 [표1]과 같이 인천대로 청소용역 1차를 2018.12.24.일 준공처리하고 2018.12.18.일 인천대로 청소용역 2차 계약한 후사고이월1)하여 2019년에 집행하였다.

¹⁾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표1] 2018년 인천대로 청소용역 계약 현황

사업명	계약금	계약방법	계약일	계약기간	준공
ㄱ 청소용역 1차	113,163천원	제한경쟁	2018.2.12	2018.2.12.~ 2019.1.11	2018.12.24
ㄱ 청소용역 2차	43,330천원	수의2인견적	2018.12.18	2018.12.18.~ 2019.4.23	2019.4.23

2. 청소용역 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에 따르면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서류 및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건설본부 ◇◇부의 각종 청소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 1. 도급자는 사업계획서(청소계획 및 소요장비, 폐기물 임시 적치장 현황 등)를 제출하여 승인 후 청소 실시
- 2. 작업일지(작업일자, 차량번호, 작업인력, 작업시간 및 내용 등)를 작성하여 제출
- 3. 현장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보관 및 인계
- 4. 사진은 착수 전·중·후·완료 등 공사 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게 촬영·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의 청소용역 관련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서류 확인 결과 [표2]와 같이 작업계획서, 작업 일보 등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미제출되었으나 시정조치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하였다.

²⁾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1.용역의 착수와 보고, 3.계약이행상황의 감독

[표2] 청소용역 중 과업지시서 미이행 현황

사업명	과업지시서의 제출사항							
2017년 ㄱ 청소용역	시공계획서	0	작업계획서 (전일제출)	×	작업결과 (당일제출)	×	폐기물 등 발생품	해당 없음
2017년 ㄴ 청소용역	사업계획서 (쟁비·인력포함)	×	작업계획서	0	작업일지 (시행후 2일이내)	0	폐기물 등 발생품	×
2018년 시설물 세척 및 청소용역	수행계획서	0	세부공정표	0	작업일보	×	폐기물 등 발생품	0

조치할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청소용역 업무처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용역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 이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